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362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았으며,
-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첨부하고,
-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내용

2. 주요내용

① 세입·세출 결산현황

[1]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잉여금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2,749,675	2,272,598	477,077	(14,000) 83,729	41,393	16,483	31,920	303,552
일반회계	1,756,378	1,631,231	125,147	(14,000) 49,636	17,462		470	57,579
특별회계	993,297	641,367	351,930	34,093	23,931	16,483	31,450	245,973

※ 명시이월의 ()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미포함

[2]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비고
1,756,378	916,228	263,868	240,157	282,125	54,000	

○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1,631,231	106,218	744,267	415,449	55,271	310,026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잉여금	잉 여 금 내 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국 고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계		993,297	641,367	351,930	34,093	23,931	16,483	31,450	245,97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	385,723	274,091	111,632	14,000	18,615	16,483		62,534
	상수도사업	118,375	95,756	22,619		1,458	16,483		4,678
	하수도사업	107,100	72,906	34,194		17,157			17,037
	지역개발기금	160,248	105,429	54,819	14,000				40,819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607,574	367,276	240,298	20,093	5,316		31,450	183,439
	주택사업	5,216	543	4,673					4,673
	도시교통사업	30,820	22,104	8,716	2,323	2,371		795	3,227
	의료급여기금	137,242	137,008	234					234
	도시개발	251,736	94,513	157,223	13,216	94			143,913
	산업단지조성	19,112	15,536	3,576					3,576
	도시철도사업	131,014	80,503	50,511		1,366		30,655	18,490
	광역교통시설	18,720	11,779	6,941	4,554	1,485			902
	학교용지부담금	8,697	1,064	7,633					7,633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04	0	204					204
기 반 시 설	4,813	4,226	587					587	

○ 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
자 산 총 액	1,255,499	569,644	491,059	194,796
부 채 총 액	282,945	54,848	65,952	162,145
자 본 총 액	972,554	514,796	425,107	32,651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
총 수 입	144,604	85,964	47,449	11,191
총 비 용	108,314	76,567	30,618	1,129
순 수 익	36,290	9,397	16,831	10,062

2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현재액 (A)	2007년도		2007년말 현재액 (D)=(A)+(B)-(C)
	수납액(B)	지출액(C)	
20종 172,251	44,292	31,452	20종 185,091

3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6년말 현재액 (A)	2007년도		2007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235,975	71,637	27,526	280,086
일 반 회 계	12,574	1,031	44	13,561
특 별 회 계	107,311	70,141	10,923	166,529
기 금	116,090	465	16,559	99,996

4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6년말 현재액 (A)	2007년도		조정액 (D)=(A)+(B)-(C)-(E)	2007년말 현재액 (E)
		발생액(B)	소멸액(C)		
계	695,022	107,519	123,909	△ 205	678,837
일반회계	254,554	54,000	47,301		261,253
특별회계	440,468	53,519	76,608	△ 205	417,584

5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현재액 (A)	2007년도		2007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6,383,955	366,845	713,163	6,037,637

6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말 현재 (A)		2007년도				2007년말 현재 (D)=(A)+(B)-(C)	
		증(B)		감(C)			
수량(점)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점)	금액
1,063	30,573	125	4,779	32	351	1,156	35,001

3. 본 문

별책 2007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 (1) 2007회계연도 결 산 서
- (2) 2007회계연도 결 산 서 부속서류
- (3)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4) 200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 산 서
- (5) 200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보고서

【 관련 법 조 문 】

◇ 세입 · 세출 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 · 세출의결산은 세입 ·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 입 :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세 출 :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한다.

◇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신청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등의 제출)

-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